2024. 9. 10. 2024학년도 2학기

운주초등학교

# 학교폭력 사안 처리

## 학교 폭력이란?



정의

학교폭력예방법 제2조

학교 내·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
## 사안처리 흐름도



사안 접수	교내 신고: 담임교사, 책임교사 등 교외 신고: 112 경찰청,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, 학교전담경찰관 등
사안 조사	사안 조사관 사안 조사 진행
전담기구 심의	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심의
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	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여 심의 개최 및 조치 사항 의결

## 사안 접수



피 · 가해 관련 학생 분리	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.(법률 제16조 제1항)
분리 예외 사항	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 2 1. 피해 관련 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2. 가해자 관련 학생 또는 피해 관련 학생이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3. 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
긴급 조치	제17조 제4항 긴급조치: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. 2호 조치란? - 피해 관련 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
피해 관련 학생 보호 조치	피해 관련 학생이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.

# 사안 조사



#### 전담 조사관이란?

학교폭력 사안의 피·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(또는 교육장)이 임명·위축한 학교폭력 조사·상담 전문가를 말한다.

#### 전담 조사관의 역할

- 1. 학교폭력 가 지해 사실에 대한 조사,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등 면담
- 2. 학교폭력 사안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

## 전담기구 심의



학교장 자체	피해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, 요건을 충족한 경우
해결	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
자체 해결 요건	<ol> <li>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</li> <li>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</li> <li>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</li> <li>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</li> </ol>

#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



심의 개최	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소속 위원회로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니거나 피 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가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개최
심의 사항	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    고 피해 관련 학생의 보호    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교육, 선도 및 징계    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간의 분쟁 조정
심의위원회의 개최 취소 요청	법률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조치 의결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,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음

# 관계 회복 및 분쟁 조정



관계	회복의
7	개념

관계 회복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, 소통,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함

## 관계 회복의 목적

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입하여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관계 회복 유의 사항

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고, 학교폭력 은폐, 축소가 아님을 유의

#### 분쟁 조정이란?

분쟁 조정은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을 의미하며, 분쟁당사자가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직접 신청

감사합니다.